

건설업 폐업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,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2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□ 폐업신고 처리 사항

상호명	대표자	등록말소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폐업사유	등록말소일
삼환기업 (주)	유창훈 (110111-0020307)	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(강남-18-02-03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, 2층 (신촌동)	그 밖의 사유 (토목 건축공사업 보유로 토공 불필요)	2024. 12. 26.

끝.